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1호 「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현행 조례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시민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시장의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.
- 이에 개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토록 한 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절차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